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06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엄태영
김기웅 · 구자근 · 김상훈
강선영 · 이성권 · 조은희
이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 <u>로 정하는 자</u>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 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 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 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 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 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 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 인 계절근로자 등 대통령령으 <u>로 정하는 자</u>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